

# 생명안전기본법안

(박주민의원 · 한창민의원 · 용혜인의원)

## 검 토 보 고

### I. 주요내용

-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,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,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,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·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,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(안 제 13조).
-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·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18조).

## II. 검토의견

### 1. ‘다른 법률의 개정’ 부칙 삭제 (안 부칙 제3조)

- 부칙 제3조에서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4호의2, 제9조 제1항제3호의2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를 삭제하고, 제10조제1항 제1호 중 제3호의2를 삭제함.

안 제13조에 따라 국가등이 안전관련 기준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중복되어 보이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“안전기준”(제3조제4호의2 등)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려는 것임.

- 부칙에서 ‘다른 법률의 개정’은 법률의 제정·개정·폐지 등으로 인하여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 등이 변경되거나 삭제되는 등의 경우에 그 법률의 제명이나 조항을 다른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으면 그 다른 법률의 자구 또는 인용 조항, 제명 등을 변경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, 다른 법률의 실질적인 내용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“안전기준”이 안 제13조에 따른 “안전관련기준”과 용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고, 제정안 본칙에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“안전기준”을 대체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없기 때문에 추후 안전기준에 대한 정책상 정리 필요성은 논외로 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의

“안전기준”에 관련된 규정을 부칙을 통하여 일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- 이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부칙 제1조 단서 중 부칙 제3조와 관련된 부분 및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마련함.

| 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정의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8조, 제1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, 제9조제1항제3호의2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삭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, <del>제13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8조, 제19조 및 부칙 제3</del><br><del>제11조,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, 제18조, 제19조 및 부칙 제3</del><br><del>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, 제9조제1항제3호의2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삭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</del><br>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|
| 제2조(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조 (제정안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del>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de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제4호의2, 제9조제1항제3호<br>의2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<br>각각 삭제한다.  | <del>제3조제4호의2, 제9조제1항제3호<br/>의2,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<br/>각각 삭제한다.</del>  |
| 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제1항<br>제3호, 제3호의2”를 “제9조제1항<br>제3호”로 한다. | <del>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제9조제1항<br/>제3호, 제3호의2”를 “제9조제1항<br/>제3호”로 한다.</del> |

## 2. 기타 사항

-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